

제1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 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622,794,044	20,272,520
일반회계	520,040,850	15,601,225
특별회계	102,753,194	4,671,295
기타특별회계	10,613,437	318,403
· 주택사업특별회계	781,092	23,433
· 교통사업특별회계	5,763,610	172,908
·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	3,737,815	112,134
· 기반시설특별회계	330,920	9,928
공기업특별회계	92,139,757	4,352,892
· 상수도사업특별회계	24,500,000	735,000
· 하수도사업특별회계	53,929,757	1,617,892
·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13,710,000	2,000,000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786,739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